

『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』 심사기준

1. 평가방안

- 평가기준 :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배전분야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
- 평가방법 : 기능자격 분야별로 가중치 부여, 가점(1점) 항목으로 운영
- 득 점=[(무정전전공×가중치)+(활선전공×가중치)+(지중전공×가중치)+(배전전공×가중치)]

○ 배전분야 기능자격별 가중치

구 분	배전가공 분야			배전지중 분야
	무정전전공	활선전공	배전전공	배전지중전공
가중치(점/인)	0.7	0.5	0.3	0.5

- 자격취득 기준일 : '17. 1. 1 이후 배전 가공분야, 지중분야 기능자격 취득 실적
- 인정기준 : 입찰신청 마감일 기준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

【신규 자격취득자(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이 없는 경우)】

- '16.12.31 이전 기능자격 미보유자가 '17.1.1 이후 신규로 기능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서, 동일 인력의 기능자격 다수 취득 인정
 - ex) 1인이 배전전공, 활선전공, 무정전전공 자격 취득시 $(0.3+0.5+0.7)=1.5 \leq 1$ 점
 - ex) 1인이 지중전공, 배전전공, 활선전공 자격 취득시 $(0.3+0.5+0.5)=1.3 \leq 1$ 점

【기능자격 추가 취득자(기존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이 있는 경우)】

- '16.12.31 이전 기능자격 보유자가 '17.1.1 이후 추가 자격 취득시 가중치 50% 인정하며, 동일 인력의 기능자격 다수 취득 인정
 - ex) 배전전공 보유자가 활선전공, 무정전전공 자격 취득시 $(0.5+0.7) \times 50\% = 0.6$
 - ex) 지중전공 보유자가 배전전공, 활선전공 자격 취득시 $(0.3+0.5) \times 50\% = 0.4$

- 업체의 비용으로 기능자격 취득후 퇴사한 경우 증빙제출시 실적 인정

□ 평가방안 추가

- '16.12.31 이전 기능자격 미보유자가 '17.1.1 이후 개인비용으로 신규 기능자격 취득후 업체에 입사하여 추가 기능자격을 취득한 경우 업체소속으로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가중치 100% 인정
- 입찰신청마감일 기준 업체 대표자가 취득한 기능자격은 가점 불인정

2. 적격심사시 심사방안

□ 고압 협력회사 적격심사시 『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』 심사방안

구분	추정도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 11억원 이상~55억원 미만	추정도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 55억원 이상~110억원 미만
특점	【심사분야 : 시공경험】 ①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(10점) ②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(3점) ③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(가점)	【심사분야 : 기술능력】 ① 무정전작업 수행능력 보유(2점) ②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(1점) ③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(가점)
	④ 해당사업소 지리, 배전계통 숙지도(2점)	

□ 「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」의 가점상한은 1점으로 하며,

①, ②, ③ 항목의 합산득점은 ①, ② 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할수 없음

- 추정도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 11억원 이상~55억원 미만 적격심사시 『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』 과 『해당사업소 지리, 배전계통 숙지도』 는 합산평가 하지 않음.